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5. 1.(금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	건축안전과	·과장 홍성준, 사무관 박영주, 주무관 박진용 ·☎ (044) 201-4987, 4988, 4992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겠습니다.

< 한겨레 등, '20.5.1(금) >

◆ 12년전 참사 뒤 ‘난연 단열재’ 의무화,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.

- 2009년 국회에서 신축 건축물에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, 국토부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규제 수위가 낮아짐

-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(4.29)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,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,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건축물의 마감재·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왔습니다.
  -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\*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, 600㎡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\* 700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되어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

- '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,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하였고, 제천·밀양 화재 이후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('19.8월)했으며,
  - '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,000㎡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로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고('10.2월), 이후 그 대상을 600㎡ 이상 창고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('14.8월)
  - 다만,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, 자재 성능 확인(모니터링) 등 점검도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박영주 사무관(☎ 044-201-4988), 박진용 주무관(☎ 044-201-49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